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2013. 1



K.I.W.R.M.A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KOREA INDUSTRIAL WASTE RESOURCES MUTUAL-AID ASSOCIATION

질의회신 사례집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Korea Industrial Waste-Resources Mutual-aid Association

목 차

1. 조합 질의 회신 사례	1
1-1 혼합폐기물 처리 관련	3
1-2 재활용 신고 및 재활용업체 영업범위 관련	3
1-3 재활용 업체 영업 관련	4
1-4 폐석면 고형화 처리 관련	5
1-5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 관련	5
1-6 음폐수 소각 처리 관련	6
1-7 “유기성오니 고화처리물”의 매립장 복토재 사용 관련	6
1-8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적용 여부 관련	8
2. 폐기물 정의 및 분류	9
2-1 폐기물 분류 관련	11
2-2 변전실 변압기 속의 절연유 분류기준 관련	11
2-3 사업장생활계 및 배출시설계폐기물의 분류기준 관련	12
2-4 슬레이트의 폐기물 분류기준 및 처리의무자 관련	13
2-5 슬레이트의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관련	13
3. 중간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	15
3-1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관련	17
3-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 관련	17
3-3 폐기물 허용보관량 변경 관련	18
3-4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연장기간 관련	18
3-5 폐기물처리업 휴업의 정당한 사유	19
3-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관련	19
4. 보관 및 처리기준	23
4-1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방법 관련	25
4-2 고형화처리물의 매립처분 가능여부 관련	25
4-3 분진의 처리방법 관련	26
4-4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확인 관련	26
4-5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방법 관련	27

4-6	소각재의 적정처리기준 관련	28
4-7	소각재의 처리방법 관련	28
5.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관리기준	31
5-1	폐기물처리시설의 교체시 변경신고 관련	33
5-2	소각시설의 용량변경 관련	34
5-3	폐기물소각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관련	34
5-4	소각시설 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 관련	35
5-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관련	35
5-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관련	36
5-7	정제시설 해당여부 관련	36
6.	매립폐기물	39
6-1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관련	41
6-2	폐기물최종처리업의 변경허가 관련	41
6-3	비산재가 묻어 있는 백필터 처리방법 관련	42
6-4	고형화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로 매립가능 여부 관련	42
6-5	폐내화물의 처리방법 관련	43
6-6	분진의 재활용 관련	43
6-7	유기성오니의 매립기준 관련	44
6-8	매립지역내 빗물의 처리방법 관련	44
6-9	소각재의 적정처리기준 관련	45
6-10	고형화처리물의 매립처분 가능여부 관련	45
6-11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의 토지이용 관련	46
6-12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해당여부 관련	46
6-13	고화처리한 유기성오니 매립여부 관련	47
6-14	매립시설에서 일부 굴착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관련	48
6-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사유 관련	48
6-16	매립시설용량 변경승인 대상여부 관련	49
6-17	매립장 침출수의 사후관리기준 관련	50
6-18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기준초과시 조치사항 관련	51
6-19	정제시설 해당여부 관련	51
6-20	매립시설의 일일복토 관련	52

6-21 가스배제층의 설치기준 관련	52
6-22 폐기물매립시설 매립가능량 산정기준 관련	53
6-23 폐기물매립시설 사전적립계획 변경대상 여부 관련 . . .	53
6-24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 사전적립금의 산정방법	54
6-25 매립가스 재이용시설 해당여부 관련	56
6-26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 및 매립된 폐기물제거 후 사용 관련	56
6-27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 실시여부 관련	57
6-28 관리형매립시설 매립대상 폐기물 관련	59
6-29 예외적 매립시설의 매립가능 여부 관련	59

7. 수집·운반 분야 61

7-1 매립폐기물의 처리방법 관련	63
7-2 처리업체의 변경시 배출자변경 신고대상 여부 관련 . . .	63
7-3 권리의무승계 신고여부 관련	64
7-4 수집·운반차량 증차여부 관련	65
7-5 폐기물처리업 동일 회사명 사용여부 관련	66
7-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관련	66
7-7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정의 관련	67
7-8 폐석고의 운반기준 관련	67
7-9 폐석면의 처리·운반·해체 관련	68
7-10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의 설치규정 관련	69
7-11 임시보관장소 공동 사용 가능 여부	69
7-12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의 이용기준 관련	70
7-1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등록여부 관련	70

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73

8-1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 . .	75
8-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의무 대상여부 관련	75
8-3 매립시설 사전적립금 산출방법 관련	76
8-4 사업장폐기물의 시장가격 존재유무 관련	77
8-5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 관련	77
8-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류 제출 관련	78
8-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 가입대상 관련	78

9. 지정폐기물	79
9-1 폐래커의 분류기준 및 처리방법 관련	81
9-2 슬래그의 폐기물 해당여부 관련	81
9-3 폐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재의 폐기물 분류 관련	82
9-4 폐산인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위한 성분분석 방법 관련	82
9-5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 관련	83
9-6 지정폐기물인 불산의 처리방법 관련	83
9-7 폐기물 보관기간의 산정기준 관련	84
10. 기술인력	85
10-1 기술능력 중복여부 관련	87
10-2 기술관리인의 겸임여부 관련	87
11. 배 출	89
11-1 분진의 중금속함유량에 따른 분류기준 및 처리방법 관련	91
11-2 지정폐기물 월평균 발생량 산정방법 관련	91
11-3 지정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관련	92
12. 기 타	93
12-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관련	95
12-2 대체기술인력 관련	95
12-3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관련	96
12-4 폐기물 처리기한(보관기한) 연장승인 가능여부 관련 ..	96
12-5 폐기물의 처리비용 관련	97
12-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관련	98
12-7 폐기물 관리법 벌칙 규정 관련	98
12-8 구미시 불산 오염폐기물 처리 관련 임시보관 가능 여부	99
12-9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관련 판례	100

1. 조합 질의회신 사례

□ 질의 요지

- 배출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분리·선별하여 각각의 처리방법에 맞게 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될 경우 재활용신고업체로의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 답 변

- 발생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선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 다만, 폐기물의 발생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입찰공고 낙찰 1순위 제지업체의 경우 재활용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로, 동 입찰에 참가하여 배출처로부터 영업대상 외 폐기물이 포함된 폐기물을 바로 위탁받아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처리영업을 한 경우.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업종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별칙) 제6호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종전의 폐기물재활용신고업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25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자목 및 환경부고시 2012-1호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의 종류 관한 규정에 의해 재활용시설에 소각시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 ※ 제지회사의 소각시설이 상기와 같은 재활용시설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되고,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된 품목의 폐기물만 취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처리 할 수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

재활용 업체 영업 관련

□ 현 황

- 어느 제지업체 [기존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에너지 회수)] 및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득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바로 위탁받아 처리

□ 질의 요지

- 동 영업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제6호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호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동법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입니다. 이 경우를 위반하면 동법 제66호제6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폐석면 고형화 처리 관련

□ **질의 요지**

- 폐석면 중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아닌 고형화되어 흠날림 또는 비산의 위험성이 없는 폐석면을 고형화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 원형 그대로의 폐석면(슬레이트 포함)을 처리하기 위해 고형화 처리하는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 **답 변**

-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4호 다목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흠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형화된 원형 그대로인 폐석면(슬레이트 포함)을 파쇄하여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다시 고형화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5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 관련

□ **질의 요지**

-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GR제품 인증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서 동 폐기물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동 인증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3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끝.

1-6

음폐수 소각 처리 관련

□ 민원 요지

- 음폐수를 약품대용으로 소각할 경우 비용 절감효과가 높고,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 대비 재활용 및 육상처리 방안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사용인증 요망

□ 답 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음폐수 처리가 가능한 바,
- 소각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약품대용으로 음폐수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7

“유기성오니 고화처리물”의 매립장 복토재 사용 관련

□ 질의사항 및 답변

-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유기성오니 고화처리물을 복토재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유기성오니 고화처리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2호 다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복토재로 이용이 가능하나 예외적 매립시설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9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토재로 이용이 가능 할 것임

- 매립시설에서 일반폐기물의 경우 얼마나(몇 미터) 매립하고 복토해야하는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2호 나2)차)(1)에 의하여 매립작업이 끝난 후 일일복토와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중간복토를 하도록 규정
- 복토의 두께는 제한이 없는지, 유기성 오니 고화처리물을 무제한으로 복토해도 되는지
⇒ 일일복토는 15cm 이상 두께로, 중간복토는 매립작업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cm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립시설은 폐기물최종 처분업 허가서에 명시된 폐기물 용량과 복토 두께를 준수하되, 복토재를 과다 사용하여 허가된 폐기물 매립용량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되어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폐기물의 매립없이 복토재용 유기성 오니 고형화물만을 매립하는 경우 고형화물을 복토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매립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서상 폐기물의 종류와 용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토재는 매립대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동 매립장에 복토재용 유기성 오니 고화처리물만을 매립하는 것은 관련 규정 및 허가 조건에 위반됨
- 만약 매립처리 한 것으로 볼 경우 이를 폐기물처리 기준에 따라 관리형 매립지에만 매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외적 매립시설에도 매립이 가능한지 여부
⇒ 유기성 오니 고화처리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최종매립처리 하고자 할 경우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이 허용되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요지

- 지자체 생활폐기물 입찰 용역에 있어서 낙찰 예상 업체가 수탁처리능력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로서 수탁처리능력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계약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탁처리능력을 초과하였음에도 타 지자체 입찰을 생활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입찰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가. 지자체 생활폐기물은 수탁처리능력 유무를 확인할 배출자 의무가 없는지?
- 나.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중간처리업(소각)업체에 과다수탁에 대한 처벌사항은 없는지?
- 다. 중간처리업(소각)업체에 관할시에서 제재할 처벌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받은 자에게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처리능력을 파악하여 계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 정의 및 분류

2-1

폐기물 분류 관련

□ 질의 요지

- 배출시설이 없는 철강회사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코일을 싸고 있는 보호 필름등의 폐기물이나 작업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 답 변

-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2-2

변전실 변압기 속의 절연유 분류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가. 변전실 변압기 속의 절연유를 단순히 폐유(지정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 나. 만약 절연유에 PCB 성분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검사대상기기 모두를 검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샘플로 건물에 대표적인 변압기를 선정해서 샘플로 일부만 검사해도 되는지 여부?
- 다. 11개 변압기(절연유 교체대상 변압기)에서 수거한 절연유를 한곳에 모아놓고 그 시료를 검사해도 되는지 여부?

□ 답 변

- 가. 폐변압기에서 발생된 폐절연유의 성분분석 결과 PCB 성분을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중 액체상태의 것에 해당되며, 그 외 PCB 성분을 함유한 액체상태 외의 것은 PCB 성분을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나. 또한 폐절연유는 성분분석 결과 PCB가 지정폐기물 기준 이내로 검출되더라도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됩니다.

다. 폐변압기 폐절연유의 성분분석은 발생하는 폐변압기마다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폐절연유를 모아서 성분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2-3

사업장생활계 및 배출시설계폐기물의 분류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사업장생활계 및 지정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즉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생활계와 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는지? 아울러 사업장생활계 및 배출시설계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

□ 답 변

○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뉘어지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질의 요지

- 가. 지붕슬레이트 같은 고형화된 폐석면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아니면 지정폐기물인지 여부?
- 나. 지붕슬레이트(석면) 철거 및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 등이 있는지 여부?
- 다. 석면 철거 및 해체공사를 원도급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설계에 반영 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발주처가 철거 및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가. 슬레이트 제조회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10~20%의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석면 1% 이상 함유)에 해당되며, 폐기물 분류번호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함,
- 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제품의 해체 및 제거 허가업체, 분리발주 등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서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참고로 지정폐기물의 처리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 분류에 폐석면의 분류가 있는데 부스러기가 아닌 공사 중 철거된 슬레이트(석면 1% 이상 함유)가 지정폐기물인지? 아니면 사업장폐기물중 어떤 분류번호에 해당되는지?

□ 답 변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78호, 2007.12.28)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71호, 2007.12.31) 각각의 부칙에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개정규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5 제3호다목4)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나. 따라서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현재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개정령 시행일 이후에는 지정폐기물(폐석면)에 해당됩니다.

3. 중간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

□ 질의 요지

-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2003년도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간당 1.5톤으로 인·허가를 득해 2008년 현재 가동 중인 설비로서 소각용량은 변경 없이 지정폐기물을 추가(사업장폐기물은 감소)하여 인·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2호 나목 1)의나)개별시설에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가 불가한지? 아니면 시행규칙 부칙 제8조에 의거 변경허가를 득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답 변

- 가.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8.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 나. 2004.8.11 이후 기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변경허가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고무 등 가연성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기계적처리전문 : 파쇄, 절단, 압축)을 운영하는 처리업체가 10km 정도 떨어진 동일한 관내에서 추가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재활용전문 : 파쇄, 분쇄)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추가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신규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참고로 영업대상폐기물, 처리공정 및 사업계획, 사업장명칭, 법인 및 대표자는 동일

□ 답 변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허가를 하므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이격된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새로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3-3

폐기물 허용보관량 변경 관련

□ 질의 요지

-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용량의 100/30이상 증가하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폐기물 허용보관량은 허가시 보다 얼마나 증가해야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 답 변

- 허가 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량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4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연장기간 관련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사유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 참고로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받았으나 사업계획상 인근주민의 민원과 사업계획상 부지확보 문제로 허가신청기간 내(3년) 신청서 접수가 어려운 상황임.
-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은 1회(폐기물최종처리업의 경우 2년)에 한하는지, 아니면 1회 연장기간 종료 후 재연장(2년 초과)도 가능한지?

□ 답 변

- 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행위나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원이나 부지확보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5

폐기물처리업 휴업의 정당한 사유

□ 질의 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3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관련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

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나.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의제” 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의제처리를 하는 것이 의제처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 민원인을 위하여 의제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무엇보다도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전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후 그 허가증 또는 신고수리필증을 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다. 그러므로 민원인이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시 대기배출시설 (파쇄·선별·분쇄시설) 도면 및 그 설명서를 포함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경우, 동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별도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허가관청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물론 본체인 행정행위를 보완하여 행정목적 달성함에 있어 행정실무적 상황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관인 조건을 붙여 허가관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답 변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입지제한, 처리대상폐기물을 당해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지, 방지지설의 적정여부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또는 배출시설설치 허가단계에서 신청인이 입을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 나.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미리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의 의제처리규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여부 통보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환경부예규 제255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2005.1.31)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시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허가·신고의 의제처리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보관 및 처리기준

□ 질의 요지

- 가. 지방자치단체의 방치된 폐기물 [도로변 또는 주택가에서 임의로 버린 건축 폐기물이나 가정 또는 상가에서 버려진 현수막(폐섬유), 합성수지(비닐봉지 비닐 등)등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 이 생활폐기물인지? 아니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인지?
- 나. 위 방치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기 곤란한 폐콘크리트 등이 일부 나올 경우 폐콘크리트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거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처리하면 되는지?

□ 답 변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투기하여 적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됨으로 시·군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고형화 처리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매립할 때 중금속, 합수율 등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고형화 처리만 한다면 조건없이 매립처리가 가능한지?

□ 답 변

- 고화 또는 고형화처리란 폐기물을 고체 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과 혼합 시킴으로써 고체 구조내에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처리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재활용전문(분진, 광재, 오폐수)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바,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분진, 광재, 오폐수 등을 선별 혼합하여 최종처리업체로 보내 성·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각장 집진기에서 발생된 분진을 처리할 경우 별도로 처리내역에 따라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 답 변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포집된 분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그 이외에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소각재를 포함하여 5종류의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확인받은 바 있으며, 소각재의 연간 발생량은 720톤이고 나머지는 연중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평균 100kg의 명확한 해석여부는?
- 나. 예컨대, 정비기간 중 촉매탑을 교체하여 540kg의 폐기물이 발생했다면 단일품목으로 540kg/12월로 계산하여 월평균 45kg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 답 변

- 가.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가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월 평균 100분의 30이상 증가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확인받지 아니한 동조 제1항1호의 지정폐기물중 한 종류가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상 새로이 발생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합계가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새로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확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월 평균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폐축매 한 종류가 540킬로그램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540\text{킬로그램}/6\text{월}=90\text{킬로그램}$ 으로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5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방법 관련

□ 질의 요지

-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받아 토양오염복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장부지와 공장부지의 제방도로 및 하천도 토양오염복원이 되어 토양경작법(랜드파밍)으로 오염토를 굴착하였는 바, 정밀조사 실시 결과 4~6m까지 오염징후 확인 후 굴착도중 1~2m에서 생활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며(현재 생활폐기물도 굴착한 상태), 인터뷰 확인 결과 시·군의 인가사항인 폐기물 매립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굴착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나. 4~6m는 복토로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나머지 1~2m는 굴착한 생활폐기물로 다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지?
- 다. 만약 되메우기를 실시 못한다면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공장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군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 답 변

- 가. 토양오염복원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굴착된 경우 동 폐기물을 다시 매립할 수 없으며, 토양오염복원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 발생된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 나. 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토지의 매매 계약조건, 취득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6

소각재의 적정처리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가. 열분해시설(1.5ton/hr)에서 폐기물처리 후 발생하는 소각재를 매립으로 처리하다가 금년부터 소각재를 시멘트공장으로 보내 무연탄과 혼합하여 부연료로 재활용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매립 →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나. 한편 탄화물을 전량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강열감량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나. 강열감량은 열분해처리 또는 소각처리시 기준이며 매립시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소각재 매립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소각재의 처리방법 관련

□ 질의 요지

-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는 지정폐기물이 아니므로 인근 지자체매립장에 매립할 예정인데, 사업장폐기물인 바닥재를 자가운반 및 자가처리로 신고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지?

□ 답 변

- 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소각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내인 경우 일반폐기물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해당되어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 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자가운반으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할 경우 위탁처리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각재를 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관리기준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5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로 변경허가를 받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허가권자는 기존시설의 노후로 폐쇄하고 '대체용'이라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설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허가를 해주었음.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배출시설)를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되어 폐쇄하고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신설로 보아야할 것이나 허가권자는 법령에도 없는 대체용이라고 하여 변경허가를 한 바 해당 행정행위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관련 근거 법령은?

□ 답 변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대기배출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동일규모로 대체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당초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시 시간당 1톤의 처리용량으로 성능검사를 통과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소각시설을 운영하던 중 시간당 1.5톤의 처리용량으로도 소각이 가능할 것 같아 시간당 1.5톤의 처리용량으로 시설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달리 말하자면 당초에 시간당 1.5톤의 처리용량 정도로 설계한 후 최초에는 시간당 1톤으로 성능검사를 통과한 후 설치승인을 받고, 나중에 시간당 1.5톤으로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변경승인 자체가 부적합한지?

□ 답 변

- 소각시설의 연소실 등 주요설비의 변동없이 당초 승인 또는 신고한 용량을 증가 또는 축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 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허가권자가 기허가 받은 서류의 적정여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3,750kg/시간)를 자가 소각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제지회사인 바, 최초 설치시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받고 설치검사가 합격되어 정상 가동 중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때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가동 중에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로를 중단 후에 받아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소각시설의 적정가동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항목에 따라 가동시와 중단시로 나누어 검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5-4

소각시설 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 관련

□ 질의 요지

-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소각용량은 500kg/hr이고 형식은 스토카식인 바, 만약 1차 2차 연소실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체류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규상 2차 연소실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인데, 이 경우 1차와 2차 연소실 체적을 합친 용적으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여 1초 이상이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구분하여 2차 연소실만 가지고 체류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소각용량 500kg/hr인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연소실의 체적으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5-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계적 처리시설인 용융시설(압출성형기)을 설치할 예정인데,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동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장소가 공업단지이고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며, 대기배출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은 시설이며, 다른 사업장의 경우 동력의 규모가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될 지라도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내로서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계적 처리시설인 용융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융 과정에서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설치 지역이나 배출시설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5-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관련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소각시설 사후영향평가항목 중 인접한 주거지역 다이옥신 측정, 악취 등은 조사를 동일(시기, 항목, 조건)하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조사” 자료로 대체가 가능한지?
- 나. 동일 측정결과로 별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다. 사후영향평가와 중복된다하더라도 항목별로 측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로 실시하는 조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일조사항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7

정제시설 해당여부 관련

□ 질의 요지

- 매립된 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또는 흙이 많이 포함된 건설폐기물로부터 토사를 분리하기 위해 진동식 선별시설을 사용할 경우, 이 선별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7)정제시설(분리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 답 변

- 정제시설이란 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시설로서, 이 경우의 분리는 물질의 혼합물을 결정, 승화, 증류 등에 의하여 어떤 성분을 함유하는 부분과 함유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동식 선별 시설은 정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6. 매 립 폐 기 물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 나. 00지역에서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선별된 토사(주로 연탄재임)를 재활용하고자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폐기물 용출시험(유해물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A지점에서는 구리(cu)가 5.0mg/L정도 검출되었으며, B지점(A지점으로부터 10km이상 떨어진 지점임)에서는 2.8mg/L정도 검출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답 변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이 되는 유해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기준미만으로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나. 매립폐기물을 굴착·선별하여 발생된 선별토사의 성분분석 결과 구리가 기준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선별토사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질의 요지

- 폐기물최종처리업체에서 운영중인 관리형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을 향후 확대(제방의 증·개축과 매립고 높이기)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매립시설의 제방의 증·개축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매립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와 시설의 안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허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3

비산재가 묻어 있는 백필터 처리방법 관련

□ **질의 요지**

-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재의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그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비산재가 묻어 있는 폐백필터의 경우 관할기관에 또 다시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답 변**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지정폐기물)를 함유한 폐백필터는 지정폐기물 중 소각재로 분류되므로 소각재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6-4

고형화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로 매립가능 여부 관련

□ **질의 요지**

- 폐석면을 고형화 처리할 경우 일반폐기물로 매립이 가능한지?

□ **답 변**

- 현재는 고형화된 폐석면은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에서 매립이 가능하나, '07.12.31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올 7.1일부터는 석면분진 등을 고형화 처리하여도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6-5

폐내화물의 처리방법 관련

□ 질의 요지

- 화력발전소의 연돌을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폐내화벽돌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는지와 그 처리방법은?

□ 답 변

- 가. 연돌로 사용한 내화벽돌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폐내화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일반폐기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6-6

분진의 재활용 관련

□ 질의 요지

- 천연펄프를 투입하여 분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펄프가루가 백필터를 통해 포집, 압축시 배출된 분진(유해물질 미함유)을 재활용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재활용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 ※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에 분진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

□ 답 변

-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나, 분진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6-7

유기성오니의 매립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리형매립시설(3종 이하 사업장, 700 루베 이하)에서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 답 변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6-8

매립지역내 빗물의 처리방법 관련

□ 질의 요지

-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산업단지 내 관리형매립시설인데, 만약 우기시 매립사면에서 발생하는 우수(비산먼지와 혼합된 우수)의 경우 사업장내 침출수 집수정을 통하여 유량조정조에 유입시켜 자체 처리 후 방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바다에 방류가 가능한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자는 폐기물의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지역내 폐기물과 접촉한 우수는 전량 침출수 집수정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6-9

소각재의 적정처리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가. 열분해시설(1.5ton/hr)에서 폐기물처리 후 발생하는 소각재를 매립으로 처리하다가 금년부터 소각재를 시멘트공장으로 보내 무연탄과 혼합하여 부연료로 재활용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매립 →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나. 한편 탄화물을 전량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강열감량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나. 강열감량은 열분해처리 또는 소각처리시 기준이며 매립시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소각재 매립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0

고형화처리물의 매립처분 가능여부 관련

□ 질의 요지

-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고형화 처리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매립할 때 중금속, 함수율 등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고형화 처리만 한다면 조건없이 매립처리가 가능한지?

□ 답 변

- 고화 또는 고형화처리란 폐기물을 고체 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과 혼합 시킴으로써 고체 구조내에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처리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지정 외 일반폐기물(무기성)을 매립한 매립장의 사용이 종료('07년 3월부터)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건축 등이 필요 없는 단순 야적장(빈콘테이너, 건축자재 보관장소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공단지역으로 주민 및 가옥이 없으며,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미치지 않는 지역임)?

□ 답 변

- 가.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당해 토지의 용도·용도 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토지의 용도에 맞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나.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는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립시설의 허가권자(또는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요지

-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최종처리업(관리형 매립시설)의 사업자로서 환경영향 평가 당시 산업단지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시설 준공 후 최종처리업 허가 시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허가 받은 바,
 - 가. 이 경우 허가용량 외에 여유용량이 발생되어 허가용량의 30%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 받아도 되는지?
 - 나. 30% 추가 반입 받는 경우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 답 변

-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한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것인지 매립시설의 용적증가(매립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6-13

고화처리한 유기성오니 매립여부 관련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관리법상 유기성오니는 소각, 고형화, 고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고화처리 후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최종처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고화처리만 한 후 직매립 가능여부)?
- 나.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때 발생가스에 대한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유기물성분이 고형물중 40%미만일 경우 이러한 시설이 필요 없는지?

□ 답 변

- 가. 유기성오니를 고형화 또는 고화처리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 나. 발생가스의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당 공장의 자가 매립시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탈수(수분 75% 함유) 후 매립하였고, 1991년 2월 28일에 매립 종료한 시설로써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공장의 복지동 건물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복지동 건물 일부가 매립시설을 침범하게 되어 현재 매립되어 있는 곳의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하고, 부분적으로 굴착된 매립부지를 건물부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 답 변

- 가. 승인받은 폐기물 매립시설에 기 매립된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고 동 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시에는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나. 매립된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제거할 경우 남은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절하게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승인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당초 처리대상 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음식물쓰레기, 오수슬러지, 소각잔재물, 유리·초자류)로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승인받아 운영 중 법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이 불가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음

- 가. 법 개정으로 승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되는지?
- 나. 법 개정으로 승인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에서 변경승인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승인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이 가능한지?

□ 답 변

- 가. 1997.7.1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라항에서 “2005년 1월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소멸화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따라서 1997.7.19일 이후 설치승인된 매립시설이라면 승인기관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2004.12.31일 까지 한시적으로 매립이 가능하다는 일몰규정 또는 조건으로 설치승인을 하였어야 타당할 것이나,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승인을 한 경우라도 변경승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 폐기물처리방법 및 기준의 변경적용에 따른 처리대상폐기물이 제외되었다면 법 개정을 사유로 설치승인서를 갱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16

매립시설용량 변경승인 대상여부 관련

□ 질의 요지

- 가.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최종처리업(관리형 매립시설) 허가 당시 매립용량이 173,580m³ 매립시설의 경우 허가용량 이외에 별도로 여유용량이 발생되어 허가용량의 30% 이하로 변경되어 용적이 225,000m³일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허가 절차 없이 변경가능한지?
- 나. 변경이 가능하다면 225,000m³ 용적만큼 폐기물을 매립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인지?
- 다. 30% 이내의 용량 변화는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사 자체에서 매립 가능용량을 225,000m³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한지? 해당관청에서도 위와 같은 운영상황을 당연히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 변

-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히 매립폐기물의 비중 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 등으로 인한 용적증가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17

매립장 침출수의 사후관리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가. 관리형매립장 매립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중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전량 이송라인을 통해 사업장 내부에 있는 폐수처리장까지 이송·처리하고, 여기서 처리된 처리수는 다시 시(市)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는데, 도청으로부터 신고한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에도 침출수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
- 나. 위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나목(1)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 관리기준 중 침출수 관리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나목(1)에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7 제2호 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처리수[(2)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송수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별표8 제2호 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사업장은 침출수에 대하여는 조사의무가 제외되어 있으나 처리수에 대하여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최종처리업체(관리형 매립장)인데, 지금까지 주변지역에 대해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었으나, 금번 관에서 채수를 실시한 결과 다른 항목은 기준치 이내의 결과를 얻은 반면, 일반세균 항목만 기준치가 초과되었음
- 나. 물론 자가측정업체에 의뢰한 결과는 기준치 이내인 바, 모든 실험 결과는 실험장비, 실험자, 시약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세균은 증식속도가 상당히 빨라 온도, 채수시 조건(먼지, 꽃가루 등)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실험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항목은 기준치 이내인 반면 일반세균만 초과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 답 변

- 지하수검사결과 일반세균의 초과사유가 매립시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립시설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매립시설 운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립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오염원인의 제거와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가. 평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매립장의 지하굴착 깊이제한에 대한 법규정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리형매립시설에 있어 매립장면적이 넓을 경우 매립장면적 전체를 한꺼번에 굴착하여 1개의 매립장시설로 운영(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한편 매립장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매립장을 소규모의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누어 블록별로 매립장시설을 갖추어 운영(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매립시설의 지하매립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립시설의 면적이 넓은 경우 전체를 1개의 매립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6-20

매립시설의 일일복토 관련

□ 질의 요지

- 폐사성분의 함수율이 높아 훔날릴 우려(거의 진흙수준임)가 없으며 악취도 나지 않을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전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제2호 나목.2)(차)의 규정처럼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동 규칙에서 정한 소각재, 광재류 이외 악취도 없고 훔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 답 변

- 매립시설의 일일복토나 중간복토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훔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일복토 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일일복토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매립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기관장이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21

가스배제층의 설치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매립시설에서 매립종료 전 가스(황화수소,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 얼마정도 측정되어야만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종 복토기준에 따라 가스배제층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무기성폐기물만 매립시에도 반드시 가스배제층을 설치해야 하는지?

□ 답 변

- 매립종료 후 최종복토시 유기성폐기물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여 가스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6-22 폐기물매립시설 매립가능량 산정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가. 허가사항에 따라 지하 20미터에서 지상까지 중량에 관계없이 매립이 가능한지 여부?
- 나. 허가받은 용적(173,580m³)에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매립대상 혼합폐기물의 비중을 1.5톤/m³으로 환산하면 약 26만톤이 되는데, 만약 이 중량을 초과하여 매립한다면 매립용량이 173,580m³으로 증가하게 되어 허가 받은 시설에서 중량 단위로 초과된 부분(26만톤 이상)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은 부피단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의 비중 및 중량과는 상관없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6-23 폐기물매립시설 사전적립계획 변경대상 여부 관련

□ 질의 요지

- 폐사는 최초 사전적립계획서를 현금(30%), 보증보험증권(70%)으로 제출하였으나 매출물량 감소 및 동종업체 신규설립 등으로 인해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못해 사전적립계획서를 현금(20%), 보증보험증권(80%)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제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사전 적립하게 함으로서, 사후관리 이행을 보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기 제출한 사전적립계획과 동일하게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담보할 수 있다면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기예치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또는 사전적립금은 사후관리업무의 이행정도에 따라 반환되며, 보험으로 갈음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24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 사전적립금의 산정방법

□ 질의 요지

-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전체 부지를 분할·조성하여 사용개시 후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구 중 1-1, 1-2공구를 사용개시 후 매립하고 있으며 향후 2, 3, 4, 5공구를 조성하여 전체 매립장을 조성 완료할 계획인 바, 사용개시신고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과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가. 사전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1-1공구 사용개시 후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 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호)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금번 1-2공구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시 위 규정에 의한 비용산출시 “별표3-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별표5-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1공구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의 비용 산출내역과 중복되는 관계로 금번 비용산출시에는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나. 매립장을 부분적으로 조성할 경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과 관련하여 당사와 같이 부분적으로 사용개시한 후 최종적으로 전체 조성된 매립 면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사용종료 신고를 할 경우 공구별로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의한 비용산출시 위의 “가”항에서 비용산출규정에 의한

별표3과 별표4를 제외하여 계산해도 사용종료시에 전체면적으로 계산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관계로 사전적립시에 기존에 사용개시한 면적을 고려하여 기존면적(1-1공구)에 금번 사용개시 신고한 면적(1-2공구)을 더한 면적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기존 1-1공구에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전 적립하는 것이 당사와 같이 매립장을 분할·구성하여 사용개시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사용개시연도의 차이에 따른 강우량차이에 의해 적립금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최종 사용종료시에 계산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 얼마이든지 사용개시 신고한 면적별로 비용을 산출하여 사전적립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면,

- 1) 전체공구의 사용종료시 산정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20억원 정도
- 2) 기존 적립한 공구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개시하는 공구별로 산정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사전적립시 34억원 정도
- 3) 기존 적립한 공구의 비용을 고려할 경우 부분적으로 공구를 구성하며 1)의 금액에 맞게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하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 변

가.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사전적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분할 시공하여 공구별로 사용개시신고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운영중인 폐기물 매립시설별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검사 등 중복되는 소요 비용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폐기물최종처리업(지정 및 일반) 허가를 득하여 매립시설을 운영하던 중 함수율 75%이하의 유기성오니를 영업대상품목으로 추가하여 매립할 계획으로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에 있는데,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검토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의 규정에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가.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이 진행 중에 있는 매립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포집배관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하여 일정기간 후 가스발생시 까지 연결하지 않고 유기성오니 매립 진행 중 이용 가능한 가스발생시점에서 매립시설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스포집배관을 매립가스 재이용 시설에 연결하여 매립가스를 재이용할 경우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만약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로 볼 수 있다면 시설 설치 검사시 매립시설 내의 가스포집배관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답 변

- 폐기물 매립시설에 1일 500톤 미만의 유기성오니를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즉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가. 오니류 등 무기성폐기물을 매립한 매립장을 2002년에 매립종료를 신고한 바 있는데, 그 매립폐기물을 다시 파내 폐기처리하면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사용가능하다면 건물 등도 지을 수 있는지(사용에 제약은 없는지)?
사용하려면 어떤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나.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받는지?

다. 현재는 매년 1회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만약 다시 폐기처리하면 일시적으로 남은 금액을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처럼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

□ 답 변

가. 폐기물 매립시설로 승인을 받은 시설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고 동 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할 시에는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함에 따라 더 이상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설치승인 받은 매립시설의 폐쇄신고 등에 따른 자세한 행정절차는 해당 승인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7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 실시여부 관련

□ 질의 요지

○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할 수 있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일일 반입폐기물 비율은 지정폐기물이 약 10%, 일반폐기물이 약 90%이며, 매립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먼저 매립한 후 상부에 일반폐기물(폐사 등)을 매립하고 있는데, 동 매립장에 일반폐기물(폐사, 분진)을 일일 매립작업을 완료한 후 일일복토를 실시하지 않은 지적사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 일일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 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가. 동 지적사항은 10%의 지정폐기물을 매립한 후 그 상부에 90%의 일반 폐기물(폐사 등)로 일일 매립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지적된 경우로서 동 위반내용이 지정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사유는?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내용중 관리형매립시설의 복토기준에 따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 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흠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악취의 발생이나 흠날릴 우려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사, 분진 등으로 매립했을 경우에도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참고 질의회신 내용 : 매립시설의 일일복토나 중간복토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흠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일복토 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임(산업폐기물과 질의회신 : '07.11.07)

□ 답 변

-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흠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흠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질의 요지

- 가. 지정폐기물(폐농약 제외)은 적정 처리 후 관리형매립장에 매립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관리형매립장을 설치·운영할 때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한꺼번에 매립할 수 있는지?
- 나. 또한 매립장 운영시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에는 상관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비율이상으로 해당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은 매립시설 설치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 나. 또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상의 사업장배출시설계 불연성 폐기물 중 연소재와 소각재의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 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 매립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매립대상 폐기물 중 “연소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바,
 제1항 :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외한다)
 제2항 :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연소재”의 경우 각각의 매립장에 매립가능한 연소재의 종류를

질의 가.의 질의내용인 연소재와 소각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해도 되는지?

- 연소재(연료소각시 발생하는 재) : 시설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
- 소각재(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재) : 시설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

□ 답 변

- 소각재는 소각시설을 이용한 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석탄, 무연탄 등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연탄재 등)은 연소재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소각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 할 수 없습니다.

7. 수집 · 운반 분야

□ 질의 요지

- 가. 매립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토사, 불연성폐기물, 가연성폐기물로 분리선별 후 가연성폐기물은 압축하여 지자체 위생매립장에 매립하였을 경우 법규정을 위반한 행위인지?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할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립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선별한 후 압축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립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공동처리로 폐기물을 처리(소각)하고 있는데,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될 시 배출자신고와 공동처리배출자신고를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3자계약서만 작성해서 운반해도 되는지?

□ 답 변

-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체만 변경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변경되는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동일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2명이 각각 나누어 별개의 법인명으로 인수하고자 할 경우 권리의무 승계시 기 체결된 3자 계약서를 전부 변경해야 하는지? 만약 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면 1개월 내에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인수하는 업체의 배출자가 2,000여개로 너무 많아 1개월 내에 변경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1개월을 넘길 경우 어떤 재제조치를 받게 되는지?
- 나.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본적 처리증명은 전부 변경해야 하는 바, 관할관청마다 처리기간이 다른데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다.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의 변경신청 시 관할관청에서 소재지 관청으로 타법 저촉여부를 묻고 있는지? 당초 인허가시 타법 저촉여부를 확인 완료하였으므로 시설 등 증설변경 등이 없다면 타법 저촉여부 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라. 현재 소재지에서 각각 권리·의무 승계를 받음과 동시에 수집운반업의 차고지 및 사무실을 타 지역으로 변경신청해도 가능한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는지?
- 마. 기본적 처리증명 및 3자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이 타당한지? 이 경우 기본적 처리증명은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데, 기타계약서 등 첨부서류는 권리의무승계를 변경된 허가증으로 같음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 변

- 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양도·양수 등으로 사유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폐기물 처리업소의 상호 및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3자 계약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 은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수집·운반업의 변경허가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에는 타법 저촉여부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주차장 소재지 변경은 변경허가대상입니다.

7-4

수집·운반차량 증차여부 관련

□ 질의 요지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기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은 5톤 암롤트럭 1대, 5톤 집게차량 1대, 1톤 포터 차량 1대인데, 사업 확대 차원에서 5톤 카고트럭 1대를 증차하여 폐기물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신규 증차 차량에도 기계식 상차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면 기존 5톤 집게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톤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마다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계식 상차장치가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증차 예정인 5톤 카고트럭 차량에도 기계식 상차장치를 꼭 부착해야만 폐기물 차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

폐기물처리업 동일 회사명 사용여부 관련

□ 질의 요지

- 기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사와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타 지역에 새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본사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즉, 타 지역에서 본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본사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여야 신청이 가능한지?

□ 답 변

- 동일인(법인)이 지역을 달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회사 대전공장 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7-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관련

□ 질의 요지

- 지방에서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 및 대표자 명의로 별도의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수도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업을 득해야 하는지?

□ 답 변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만으로 서울지역에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습니다.

7-7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정의 관련

□ 질의 요지

-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은 일반적으로 짐게차 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톤 포터나 카고차량 후면에 설치한 유압식 적하기(리프트)도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에 해당되어 수집·운반업 차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 기계식 상차차량이란 화물이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짐게차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 적하기(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7-8

폐석고의 운반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석고를 매립장이나 재활용업체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배출자 신고는 어떤 종류의 폐기물로 하여야 하는지? 또한 수집·운반은 어떤 업종의 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 답 변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 하여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석면을 1%이상 함유할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100톤 이상 처리할 경우 별도의 발주를 통해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처리토록 시행하고 있는바,
 - 가. 지정폐기물이 일정한 물량 이상일 경우 처리시 별도의 발주를 통한 계약으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지?
 - 나. 석면의 처리대상 지역은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인데, 이 경우 처리비용은 처리업체까지의 운반거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 다. 지정폐기물을 해체할 경우 일반 시공업자도 보호구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조치한 후 해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체작업도 지정된 업체가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해당면허는 무엇인지?

□ 답 변

-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령 중 석면관련 조항은 '08.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폐기물 처리확인 증명을 받은 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집운반업자와의 계약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업자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업자와의 계약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 석면함유물질(중량비율 1%이하 제외)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0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의 설치규정 관련

□ 질의 요지

- 레미콘 생산 장비인 B/PLANT의 구리스 등 폐유와 폐결래 등에 대한 지정 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은?

□ 답 변

-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에서 정하는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등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7-11

임시보관장소 공동 사용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 현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임시보관장소에 타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가능한지?

□ 답 변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는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승인받은 장소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다른 수집·운반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질의 요지

- 현행법(2008.03.18)상 석면폐기물은 고형화처리(석면분진, 옷, 비닐 등)와 관리형매립시설에 최종처리(원형그대로의 슬레이트, 텍스 등)하도록 2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 가. 고형화처리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관리형매립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08년 07월부터는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는지?
 - 나. 만약 법개정시 관리형매립시설로 반입되는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텍스)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만이 운반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차량도 운반이 가능한지?
 - 다. 만약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석면함유물질을 운반하지 못한다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운반하여야 하는데,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텍스)만 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관할 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중 석면 관련 조항이 '08.7.1 부터 시행되게 되며, 석면의 수집·운반은 모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중 차량구비기준에는 고상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암롤트럭, 바켓로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이 있는데, 현재 보유한 차량이 카고트럭인 바 동 카고트럭에 판넬을 붙이면 컨테이너트럭처럼

지정폐기물을 빗물과 바람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로 보아 고상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답 변**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킷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톤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1/2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다른 차량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고트럭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 보관시설이 필요 없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와 폐기물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폐기물배출업체와 계약과 관련된 필요서류인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배출업체에 제출하였는데, 배출업체에서는 기존 처리방법과 달라졌기 때문에 배출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 나. 한편 배출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에 관련서류(처리업체의 재활용신고필증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 다. 폐기물처리업체의 관할청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없이 수리 받은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과 수탁처리능력확인서만을 가지고 변경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인 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방치

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대상자인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2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3

매립시설 사전적립금 산출방법 관련

□ 질의 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매립장 면적현황
 - 운영 중인 매립장 총 면적 : 59,430㎡(최초 : 54,562㎡ + 추가 4,868㎡)
 - 최초 사용개시 면적 : 54,562㎡(사용개시 : 2005.10.4)
 - 추가 증가면적 : 4,868㎡(사용개시 : 2008.2.25, 별개의 매립시설이 아닌 동일한 매립시설임)
 - 변경(증가)사유 : 공사 준공을 위한 외곽 지구계 경계측량실시 결과 면적이 지형상의 차이로 변경(증가)됨
 - 추가면적(4,868㎡)에 대한 사전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함
 - 가. 기존 납부중인 당초 면적(54,562㎡)에 추가면적(4,868㎡)을 합산한 총 면적(59,430㎡)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산정하여 일괄 납부하여야 하는지?
 - 나. 아니면 기존 납부중인 당초 면적(54,562㎡)과는 별도로 추가 면적분(4,868㎡)에 대해 다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산정하여 당초면적과 별개로 구분하여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가.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제도는 폐기물매립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사전 적립하게 함으로서 사후관리이행을 보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매립시설별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사전적립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나. 따라서 동 매립시설이 단순 면적만 변경되어 하나의 매립시설인 경우 변경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산출하여 사전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4

사업장폐기물의 시장가격 존재유무 관련

□ 질의 요지

- 폐기물배출자 및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법정 시장 또는 거래가격이 있는지?

□ 답 변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는 지정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 가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8-5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 관련

□ 질의 요지

-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이 고시가 되어 있는지
- 만약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이 고시가 되어있다면 고시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업무 진행시 폐기물 고시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비용 원가계산에 적용해도 무방한지

□ **답 변**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장폐기물의 실제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비용은 배출자와 처리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8-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류 제출 관련

□ **질의 요지**

- 소각재를 재활용신고업체로 위탁처리코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 가입대상 관련

□ **질의 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에서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지고와서 가축먹이로 이용시 보관시설 없이 수거후 사용하게되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지정 폐기물

□ 질의 요지

- 도장공정 등에서 발생한 폐래커를 현재 전량 압착하여 고온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폐기시 폭발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전량 2cm이상의 구멍을 내어 폐기처분하고 있는 바, 2007년 개정법규에 의거 폐래커 용기 내 잔량이 3mm이하인 경우 고철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2007.2.1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된 폐기물은 폐페인트 용기이며, 폐래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 요지

- 공정 용해로 내부에 산화된 마그네슘의 슬래그 물질 구성성분을 보면, 알루미늄 : 8.66%, 망간 : 0.2%, 아연 : 0.76%, 구리 : 0.001%, 철 : 0.002% 이며 나머지는 마그네슘의 성분(Mg 90%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 가. 이 경우 슬래그를 비철로 보아야 되는지, 폐기물로 광재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
 - 나. 마그네슘 피를 생산하는 업체(B)로 당사에서 발생하는 상기 슬래그를 위탁하여 다시 원재료인 마그네슘 피를 제조할 경우 업체(B)는 재활용 신고업을 득하지 않고 당사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만약 처리업체가 재활용신고를 득하여야 한다면 폐기물처리종류를 무엇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가. 광석 등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슬래그는 광재로 분류되며,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탁 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3

폐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재의 폐기물 분류 관련

□ 질의 요지

- 각 폐수처리장 슬러지의 소각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각장마다 배출되는 슬러지를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소각재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각장마다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9-4

폐산인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위한 성분분석 방법 관련

□ 질의 요지

- 폐бат데리 내에 함유되어 있는 30%정도의 폐황산(분류번호 02-01-02, 액상)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유사민원을 보면 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받을 때 폐알카리나 폐산의 경우는 분석결과서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폐бат데리(폐황산)의 경우도 분석결과서가 없어도 되는지?

□ 답 변

- 지정폐기물 중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별도의 성분분석 없이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 관련

□ 질의 요지

-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이 45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 보관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폐기물 총량이라 함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합한 총량인지? 아니면 지정폐기물만의 총량인지?

□ 답 변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산정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총량’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정폐기물의 합계를 말합니다.

9-6

지정폐기물인 불산의 처리방법 관련

□ 질의 요지

- 외국에서 불산(50%)을 드럼에 넣은 상태로 수입하여 불산 자체만 판매하고 드럼은 회수할 예정인데, 이 때 회수된 드럼을 지정폐기물(기타 폐산)로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드럼 내에는 불산이 약간 묻어있을 것으로 추정됨), 당사가 지정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 답 변

- 가. 공급자의 자산으로서 사용자가 사용한 드럼을 공급자가 회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공급자가 전량 회수하여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 공급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배출하면 됩니다.
- 나. 유독물의 경우 원래농도의 유독물을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중 폐유독물에 해당되나, 유독물을 공정 중에 투입하는 등으로 타 물질과

혼합되어 농도가 다르게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예: 폐산, 폐유기용제)에 따라 분류됩니다.

다. 폐용기 내부에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9-7

폐기물 보관기간의 산정기준 관련

□ 질의 요지

- 가.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 이내인지 또는 90일 이내인지? 아니면 1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보관기간은?
- 나. 보관기간의 산정시기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보관일로 산정되는지?

□ 답 변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10. 기 술 인 력

□ 질의 요지

- 가. 동일 법인회사에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과 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두 가지 업종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업종에 대한 기술인력 2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인이 겸할 수 있는지
- 나. 동일 법인회사가 같은 시·도 내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된 2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동일한 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일 경우에도 각각 2인의 기술인력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인이 겸할 수 있는지
- 다. 기술인력에 대한 선임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임명하기만 하면 되는지

□ 답 변

- 가.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동일 법인회사라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기술능력을 각각 보유하여야 합니다.
-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당해 회사 내에서는 기술능력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내부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실제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에 따른 기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사업장이 1종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술관리인 선임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기술관리인 선임을 각각 따로 해야 하는지? 만약 따로 해야 한다면 내부선임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할시 또는 군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11. 배 출

□ 질의 요지

- 가. 분진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중 중금속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장 폐기물이고,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지?
- 나. 이러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할 경우 어느 기관에 문의하여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서 정하는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 폐기물로,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합니다.
- 참고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월평균 발생량이라 함은 1년간 배출한 양의 총량을 12개월로 나눈 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회 배출시 그 기준을 넘으면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 답 변

- 월 평균 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최근 6개월간 총 배출량을 6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하되,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 질의 요지

- 가. 사업장의 기계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폐유 : 6톤/년)를 제출하고 처리하여 왔는데, 지금은 발생량이 신고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발생량의 일부(약 100kg/년)는 기계의 마찰부위에 단순 윤활제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처리하여야 할 폐유가 약 400kg/년 정도임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폐유일 경우는 월 평균 50kg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우리 사업장은 월평균 발생량이 약 42kg정도이고 처리량이 약 33kg정도이면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유 발생량이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2. 기 타

□ 질의 요지

-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종사업장의 기술관리인인 대기환경기사 보유자가 배출 시설(방지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도 겸임 임명이 가능한지?
- 나.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있을 경우 기계기사 자격증 보유자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 답 변

- 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1종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대기환경기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감염성 제외)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나.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과 소각시설의 기술관리인은 각각 보유하여야 하며 겸임할 수 없습니다.
- 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됩니다.

□ 질의 요지

- 대기산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대기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를 대체하여 자격선임이 가능한지
(예, 폐기물처리기사 = 대기산업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로 대체선임 가능여부)?

□ 답 변

-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 중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일반) 및 수집·운반업(지정·일반)으로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로서 중간처리시설(대기 2종)을 운영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대기 2종)의 환경관리인으로 대기기사를 선임중에 있는 바, 중간처리업(기사이상) 및 수집·운반업(산업기사 이상)에서 필요한 기술능력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나. 만약 인정받을 수 없다면 위의 처리업(중간·수집운반) 및 폐기물배출시설의 최소한의 기술인력은 몇 명을 선임해야 되는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선임된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과는 겸임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도 장비 및 기술능력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 질의 요지

- 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고장이나 정기보수로 폐기물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나.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그 기간 내에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 연장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물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다. 처리기간이 연장된 폐기물을 연장기한 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기간 연장기한 중에도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지? 다만, 새로이 반입한 폐기물을 법이 정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답 변

-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등으로 처리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기간동안 처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한 시설의 정기보수 등은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동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 다. 폐기물의 처리연장기간 중 새로운 폐기물의 반입여부는 처리기간 연장 승인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연장승인을 받은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후 새로운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2-5

폐기물의 처리비용 관련

□ 질의 요지

- 재정경제부 허가 월간물가 자료 2007. 4월 No.388호의 (하)권 206페이지의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질의 사항임(참조 환경부고시 제2004-91, 2004.6.24)
 - 가. 테라조판의 방치폐기물을 페타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으나, 상기 물가자료상 폐기물 종류로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나. 테라조판을 만들기 위한 종석(석분)등도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다. 물가자료상의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는 수집·운반비용 및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처리단가인지?

□ 답 변

- 환경부고시 제2004-91호(2004.6.24)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고시한 것으로 수집·운반을 포함한 전체 처리비용이며 실제 폐기물처리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12-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관련

□ 질의 요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재활용신고 및 폐기물 가동개시 신고를 접수한 뒤 연휴를 포함(가동개시접수 후 10일)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 위법한 행위인지?

□ 답 변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설치신고한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7

폐기물 관리법 벌칙 규정 관련

□ 질의 요지

- 폐기물관리법 63조(벌칙)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됨.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형사처벌을 또 받아야 되는지 행정기관 처분 후 형사고발이 의무사항인지 해석 요함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 질의 요지

- 구미 불산 오염폐기물의 경우 국가 재난사태로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처리하는 소각업체에서 기존 물량으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반입되는 불산 오염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옥외·야적 임시 보관하여 선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3호다목3) 단서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불산 오염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 일시에 대량 발생하는 불산 오염 폐기물의 원활한 안전처리를 위해 사업장내에 임시 보관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소재 (주)휴브글로벌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산 오염폐기물의 원활한 안전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3호다목3) 및 「불산 오염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장내의 옥외 등에 임시보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 ※ 보관방법 : 콘크리트바닥 등에 보관하되, 침출수 발생이 되지 않도록 비닐 덮게 설치, 화재발생 대비 소화기 배치 등 불산 오염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별도 송부). 끝.

□ 사건개요

-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6. 1. 청구인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에 첨부된 정제유기용제 사용업체와의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된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을 수리하여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업무를 기존의 방식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정제유기용제공급계획서를 미제출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지장을 준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지도나 홍보도 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경감할 수 있다고 권고'한 환경부의 행정처분경감에 관한 회신을 적용하지도 않고 영세업체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 피청구인은 2007. 2. 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환경부령 제228호로 개정되어 폐기물처리업자 중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의 제출의무 대상자가 종전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에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2007. 3. 21. 폐기물처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를 안내하였으며,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정제유기용제 사용업체와의 계약서상 공급기간이 만료되면 신규공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청구인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폐유기용제로 생산한 정제유기용제를 공급하거나 공급량·공급기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정제유기용제 공급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공급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국산업 등 6개 업체에 정제유기용제를 공급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과징금 감면조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영업정지 감면조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내용이 기 제출한 공급계획서의 갱신에 관한 서류제출이라는 단순한 절차의무의 위반으로서 환경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행정처분기준 상 영업정지 1개월로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기준·방법위반, 폐기물 보관량·보관기간 위반은 물론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별표 8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중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수탁이나 시설·장비·기술능력 유지의무 위반 등과 비교해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이 아예 처음부터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제유기용제를 공급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가 연간 순이익 6,915만원인 중소규모 사업체인 점, 최초 허가를 받은 이래 위반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의 감경사유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인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함.

□ 결과

- 피청구인이 2009. 6. 1.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